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표시 관련 제도 개선 Q&A

26.08.20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제2026-798호(2026.08.20.))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제조·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Q&A 자료 배포합니다.

<순 서>

- ☐ (제조·수입업체) 전자라벨, QR코드 관련 질의 및 답변(Q1 ~ Q13)
- ☐ (제조·수입업체) 선언값 관련 질의 및 답변(Q14 ~ Q23)
- ☐ (소비자) 전자라벨 관련 질의 및 답변(Q24 ~ Q28)
- ☐ (시험기관) 선언값 관련 질의 및 답변(Q29 ~ Q32)

Q1

QR코드를 스캔하면 어떤 정보가 표출되나요?

- QR코드 스캔 시, 품목마다 표출되는 정보는 상이합니다. 업체명, 모델명, 라벨에 기재된 항목 및 사후관리 점검 항목을 기본적으로 표출합니다. 이외에 표준 시험 조건, 에너지 비용과 CO2 배출량 산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신고모델과 동일성능인 모델명(추가모델명) 및 소비자 신고 채널도 표시 예정입니다.

Q2

전자라벨에 삽입하는 QR코드는 어떻게 만드나요?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신고시스템에서 신고 모델별 각각 QR코드 생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신고업체에서는 해당 QR코드를 라벨 제작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Q3

회사 사정으로 인해 내부시스템에서 QR코드를 생성하여 라벨 제작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신고 시스템에서 생성한 QR코드만 사용하여야 하나요?

- QR코드에 담긴 정보는 각 모델별 전자라벨의 인터넷 주소(URL)입니다. 따라서 해당 모델의 정확한 전자라벨 주소와 연결된다면, 보안 등의 사유로 업체 내부 시스템을 통해 QR코드를 직접 생성하여 라벨에 표시하여도 됩니다.
- 다만, 자체 QR코드 생성으로 인해 QR코드 주소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QR코드는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만 만들 수 있나요? 신제품 출시하는 경우 출하 일정을 맞추기 위해 라벨을 미리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고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QR코드를 미리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축 중인 전자라벨 시스템 상 예비신청(가승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출하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델명만 입력하여 QR코드를 미리 생성하고 라벨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예비신청은 정식 신고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품 시장 출하 전 시험성적서를 포함하여 정식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정식 신고완료 없이 출하할 경우 미신고 등 사후관리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5

라벨 축소할 수도 있는데, QR코드 최소 크기가 있나요?

- 일부 품목은 라벨의 크기를 비율대로 축소하여 표시가능하나, QR코드는 0.7cm 이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 (관련근거) 개정안 [별표7]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작도법 - ‘라. 크기’ 참고

Q6

어댑터·충전기는 왜 전자라벨(QR코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나요?

→ 어댑터·충전기 품목은 제품특성 상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아 QR 코드 최소 크기를 충족 못 할 수도 있어 전자라벨 도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7

QR코드가 포함된 전자라벨 신규 디자인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 품목별로 상이합니다.
- 김치냉장고, 삼상유도전동기, 가스온수기, 텔레비전수상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등 5개 품목은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디자인 적용합니다.
- 고효율 인증제도에서 이관하는 LED 등기구 품목은 2028.1.1.부터 신규 디자인 적용합니다.
- 그 외 나머지 42개 품목은 고시 개정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디자인 적용합니다.
- 참고로 어댑터·충전기 품목은 신규 디자인 적용하지 않습니다.

Q8

왜 품목별로 전자라벨 신규 디자인 시행시기가 다른가요?

→ 금번 행정예고 따른 개정사항에는 일부품목의 효율 기준 상향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품목 효율기준 상향 시행일과 신규 전자라벨 디자인 적용시기를 일치시켰습니다. 이는 기준 변경과 라벨 교체가 각각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조·수입업체의 이중 작업 등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9

라벨 하단의 적용기준 시행일도 전자라벨 시행일로 변경해야 하나요?

→ 라벨 하단에 기재하는 적용기준 시행일은 해당 품목의 최저소비효

율기준, 효율등급부여 기준 등 ‘효율기준’의 시행일자입니다.

→ 즉 전자라벨 도입으로 인해 라벨 디자인만 변경되는 경우 적용기준 시행일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업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품목별 적용기준 시행일은 효율관리제도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Q10

이미 시장에 출하되어 매장에 디스플레이 되어있거나 창고에 있는 제품들도 QR코드가 포함된 전자라벨로 변경 부착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제조일자 기준으로 고시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고시 개정일자를 2027년 1월 1일로 가정한다면, 전기냉장고의 효율 기준 변경 및 전자라벨 도입 시행일자가 2028년 1월 1일이라면, 2028년 1월 1일 제조된 제품부터 QR코드가 포함된 라벨을 부착하시면 됩니다. 해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도 제조일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Q11

해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은 제조일자 기준인가요? 통관일자 기준인가요?

→ 제조일자 기준입니다.

Q12

라벨에 CO2 배출량이 제외되었던데, 이제 CO2 배출량은 확인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QR코드 스캔 시 CO2 배출량 확인 가능합니다.

Q13

신규 시행되는 전자라벨 디자인은 어디서 받나요?

→ 신규 디자인은 효율관리제도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고시 개정 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Q14

선언값은 무엇인가요?

- 제조·수입업자가 측정결과보다 낮게 소비효율, 효율등급을 신고·표시할 목적으로 선언하는 값으로 시험성적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소비효율 및 효율등급은 1개 등급 이내로 낮게 선언 가능하며, 이 경우 단위기간당 소비전력량, 에너지비용, 등급부여기준(R) 등 항목을 포함하여 선언해야 합니다.

Q15

**측정결과가 1등급인데 왜 2등급으로 신고·표시하나요?
[또는 측정결과가 98.9%인데 왜 최저소비효율기준인 98%로 신고·표시하나요?]**

- 그동안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제 측정결과가 1등급(또는 98.9%)으로 높게 나왔더라도 양산 과정에서 편차, 사후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허용오차범위 등을 고려하여 업체가 안정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값(2등급 또는 98%)으로 낮추어 표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 금번 행정예고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낮게 표시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선언값에 대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향후 진행되는 사후관리 역시 신고값 기준으로 실시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6

측정결과 그대로 효율등급, 소비효율을 신고·표시한다면 시험성적서에 선언값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 맞습니다. 시험성적서에 측정결과만 기재하여 발급받고, 신고 및 표시하시면 됩니다.
- 별도의 선언값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측정결과가 신고값으로 대외 공개되며, 사후관리 기준이 됩니다.

Q17

측정값, 선언값, 신고값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측정값은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측정결과입니다.
- 선언값은 업체에서 사후관리 리스크 대비하여 측정결과보다 낮게 선언하는 값입니다.
- 신고값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신고시스템에 신고 완료한 값을 의미합니다. 측정결과만 신고하신 경우 측정결과가 신고값이 됩니다. 측정결과와 더불어 선언값을 추가 신고하신 경우 선언값이 신고값이 됩니다.
- 업체에서는 신고값을 라벨에 표시하셔야 하며,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후관리 시 신고값과 비교하여 적합, 부적합을 판단합니다.

Q18

선언값 신고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품목별 전자라벨 시행일자와 동일합니다.
- 김치냉장고, 삼상유도전동기, 가스온수기, 텔레비전수상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등 5개 품목은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선언값을 신고하고 표시하셔야 합니다.
- 고효율 인증제도에서 이관하는 LED 등기구 품목은 2028.1.1.부터 선언값을 신고하고 표시하셔야 합니다.
- 그 외 나머지 42개 품목은 고시 개정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선언값을 신고하고 표시하셔야 합니다.

Q19

기 신고가 완료된 모델들의 선언값은 어떻게 하나요?

- 신고가 완료된 모델들 중 별도의 선언값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전자라벨 시행일자 3개월(90일) 전부터 시험성적서 등록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열어둘 예정입니다.
- 효율성능 시험을 다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측정결과에 선언값을 병기하여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아 지정된 기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20

기 신고가 완료된 모델인데, 측정결과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 별도의 선언값이 없으므로 성적서 재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나요?

→ 맞습니다. 현재 측정결과를 라벨에 그대로 쓰고 있다면, 별도로 성적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고, 라벨 디자인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Q21

선언값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선언값은 시험성적서 기반으로 신고하므로 수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초 신고한 선언값이 해당모델 말소까지 유효합니다.

Q22

시험성적서에 기재되는 항목이 많은데, 어떤 항목들에 대해 선언값을 써야 하나요?

→ 선언값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별표6]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재항목별로 모두 측정값과 선언값을 기재하여 신고바랍니다.

Q23

2020년에 신고완료된 모델로 당시에는 측정결과 1등급이었으나 2등급으로 라벨에 표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효율기준이 2025년 상향하여 현행 기준으로는 3등급 제품이나, 2024년 이후 제조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 경우 선언값은 무엇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생산이 중단된 제품은 말소를 권장드립니다.
- 다만 유통 재고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 기준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므로 향후 도입할 선언값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 업체 사정 상 말소가 어렵고 선언값을 신고하셔야 한다면, 현행 효율기준에 부합하는 효율등급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Q24

QR코드 스캔하려면 전용 앱 설치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면 해당 웹페이지가 열립니다.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개인정보 입력 필요 없습니다.
- 만약 기본 카메라로 실행안될 경우 네이버앱, 구글렌즈 등을 통하여 QR코드를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Q25

QR코드를 스캔해야만 효율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에 효율등급, 소비전력량, 에너지 비용 등 중요정보는 제공됩니다.

Q26

매장 제품 또는 구매한 제품 라벨과 QR코드 정보가 상이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QR코드 스캔 시 제공되는 웹페이지 화면 내 소비자 신고 채널을 활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27

매장에 전시된 제품 중 동일 모델인데 어떤 건 QR코드가 없는 라벨이고 어떤건 QR코드가 있는 라벨입니다. QR코드가 없으면 위법인가요?

- 전자라벨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QR코드가 없는 라벨을 부착하는게 맞습니다. 제조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8

매장에 전시된 제품 중 옆 제품은 구형 라벨, 이 제품은 신형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효율을 비교해도 되나요?

- 라벨 하단에 기재된 적용기준 시행일을 확인바랍니다.
- 두 제품에 적용기준 시행일이 동일하면 같은 기준으로 효율을 비교

하셔도 됩니다. 만약 적용기준 시행일이 다르면 효율기준이 상향되어 효율등급이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같은 기준으로 효율을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Q29

시험성적서에 선언값 기재를 위한 서식이 제공되나요?

→ 시험성적서 양식은 시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이에 시험기관별로 선언값을 기재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Q30

품목별로 선언값 명시하는 항목이 있나요?

→ 선언값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별표6]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재항목별로 모두 측정값과 선언값을 기재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Q31

선언값은 업체가 정하는 값인데, 시험기관이 책임을 지나요?

→ 선언값은 측정결과 대비 1개 등급 이내로만 선언 가능하며, 업체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이에 시험기관에서는 소비효율 및 효율등급 선언에 따른 단위기간당 소비전력량 등 시험성적서 기재 항목별로 정합성 검증 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Q32

선언값이 1개 등급 이내 요건에 벗어나면 시험기관이 발급을 거부해야 하나요?

→ 개정(안) 제3조(용어정의)에 따라 선언값은 1개 등급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측정결과 대비 1개 등급 이내 요건에 벗어날 경우 효율관리기자재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본 자료는 제도개선 관련 문의주시는 질의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